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January 13,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OECD 의 국가별 APA 통계 발표

2024 년 11 월 15 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초로 국가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OECD 가 발표한 APA 통계는 APA 통계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 많은 관할지를 포함하여, 전 세계 APA 진행 건수와 관할권별 APA 처리 속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APA 통계는 상호합의절차(MAP) 통계와 함께 기업이 이전가격 위험 관리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MAP/APA 주요 동향

2023 년 동안 MAP 진행 건수는 3% 감소한 반면, APA 진행 건수는 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세무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APA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5 년 이후 MAP 진행 건수는 2,770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APA 진행 건수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APA 를 각 관할권에서 중복 계산한 결과) 4,080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 APA 처리 건수

일본은 보고 기간 동안 164 건의 APA 를 처리하여 전 세계 국가 중 최다 건수의 APA 를 처리하였습니다. 일본은 APA 및 MAP 담당 인력이 46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미국이 132 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과 스위스도 각각 85 건과 75 건의 APA 를 처리하며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수준 높은 APA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높은 효율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체결한 양자간 APA 의 32%가 일본과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APA 의 47%가 갱신 건이라는 점도 수준 높은 행정력 등 여러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APA 처리 속도

APA 처리 속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덴마크는 평균 23 개월로 OECD 가 제시한 장기 목표인 24 개월을 초과 달성하며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나타냈습니다. 중국(25 개월), 스위스/싱가포르(26 개월) 역시 OECD 의 단기 목표인 30 개월을 충족했습니다. 반면, 아일랜드와 인도는 평균 60 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복잡한 무형자산 관련 사안 및 다국적 연관성이 높은 사건이 많아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인도의 경우, 국내 소송과의 연계로 인해 일부 사건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인도는 32 건의 APA 승인 외에도 18 건이 '기타 사유'로 종결되었는데, 이는 납세자가 일방 또는 양국 당국의 권고 또는 국내 상황 변화에 따라 철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트남은 APA 소급 적용 제도의 부재로 인해 9 건의 케이스가 '기타 사유'로 종결되는 특이사항이 있었으며, 이는 BEPS Action 14 최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 APA 신규 신청 현황 및 MAP 대비 APA 비율 분석

루마니아, 핀란드, 스페인은 기존 진행 건수 대비 신규 신청 건수 비율이 각각 52.2%, 51.4%, 46.9%로 높아 APA 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스페인, 벨기에, 독일, 프랑스는 MAP 대비 APA 비율이 낮아 분쟁 예방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벨기에와 스페인은 APA 진행 건수가 40% 이상 증가하여 APA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PA 는 납세자에게 세무 확실성, 향후 과세 당국과의 분쟁 위험 감소, 장기적인 compliance 비용 절감, 그리고 과세 당국과의 관계 개선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APA 활용 여부를 결정할 때 거래의 성격 및 복잡성, 향후 세무 분쟁 예방의 중요성, 이중과세 해소의 중요성, 그리고 관련 국가 세무 당국의 실적(처리 속도, 성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바레인: 소재국 추가세 과세제도(DMTT) 시행 규칙 발표

바레인 국세청(NBR)은 다국적 기업 과세 시행에 관한 2024 년 법령 제 11 호의 시행 규칙(DMTT 법의 시행 규칙)에 대한 2024 년 결정 제 172 호를 발표하였습니다. DMTT 법의 시행 규칙은 바레인 DMTT 법의 시행 및 집행에 대한 세부 규칙,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바레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이전 및 세원 잠식(BEPS) Pillar Two 포괄적 이행

체계에 맞춰 DMTT 를 시행하는 최초의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로, 바레인 내 DMTT 는 2025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NBR 은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로 이미 NBR 에 등록된 납세자를 위해 웹사이트 내 DMTT 등록 신청 기능을 활성화했습니다. 이 기능은 납세자 홈페이지에서 NBR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레인에 진출한 적용 대상 다국적 기업은 벌칙 부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DMTT 가 바레인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적 분석을 권고 드립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3 인 9822, (2024.10.10)

제목: 법원은 관련형사판결에서 해외특수관계인을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보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인정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해외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오디오 및 통신 관련 기기 등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① 2018 사업연도 중 중국에 소재한 A(이하 "A")의 발행주식 100%(이하 "쟁점주식")를 해외특수관계인인 B(이하 "B")에게 무상 이전하였고, ② 2019 ~ 2020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해외주채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000원(이하 "쟁점 인건비") 등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주식의 시가를 000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대상으로 보았으며, ②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
 -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당해 사업연도가 결손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하거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제기함

- **쟁점**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p>청구법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이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청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B를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고,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함. 그렇다면 쟁점주식 매각 행위는 청구법인이 스스로에게 한 행위로 해석되며,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결과를 초래함 - 조사청의 과세논리대로라면 청구법인이 스스로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쟁점주식의 인수주체를 B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조사청이 스스로 B를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조사청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B는 페이퍼컴퍼니이고 B의 실제 용역 수행 및 소득의 주체가 청구법인이라면, B는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인수주체가 될 수 없고 B의 소득과 모든 자산·부채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주식매각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p>청구법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이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청은 B를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으나, 확정된 쟁점형사판결에 따라 B를 적법한 법인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B에 쟁점주식을 시가(000원)보다 저가(0원)에 양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쟁점주식의 시가 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p>청구법인이 2019 ~ 2020 사업연도 중 해외주채원들에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주채원들 중 d는 2021년 2월까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며, 청구법인과 베트남 소재 해외자회사인 D(이하 "D")의 제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b 역시 D에서 근무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제조·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 - A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해외주채원 000 등에게 지급된 월 000원의 급여는 A 	<p>청구법인이 2019 ~ 2020 사업연도 중 해외주채원들에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가 B에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2019 ~ 2020 사업연도 동안 A에 파견된 해외주채원들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할 사유는 없음 - 쟁점형사판결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B의 해외주채원들에 대한 급여는 B가 지급했으며, B는 2019년경부터 청구법인 및 A와 분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B의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p>가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가 해당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으며, 2019년 4월경부터 B에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부득이 지급된 것임</p> <p>- 해당 급여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위로금 및 중국거주 거주증 행정처리비용 등 기존 고용관계의 정산성격으로 해외주재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관련비용에 해당함</p>	<p>사유는 없음. 만일 지급했다면 그들의 업무가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 절차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조사 및 불복과정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p>
--	---

- 판단 및 결론

-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B가 페이퍼컴퍼니라는 전제에서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법원은 B를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보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확정(쟁점형사판결)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시가 000원에 달하는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B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이 건에서 청구법인과 B, A는 각각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B, A에 파견된 해외주재원들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증대에 직접 기여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청구법인이 아닌 B 소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를 받은 임직원들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인건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03

관세

2025년 관세법 개정안 분석

1. 개요

2024년 7월 25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며 관세법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 8월 5일 뉴스레터를 통해 한차례 정리한 바 있으나, 최종 확정된 개정안을 포함하여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대해 상기할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재안내드립니다.

관세법 주요 개정안	적용 시기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	'28.01.01 이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25.01.01 이후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	'25.01.01 이후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25.04.01 이후
수출·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	'25.01.01 이후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	'26.01.01 이후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	'25.01.01 이후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	'25.01.01 이후

2. 「관세법」 주요 개정사항

1)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 (제9조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사유 : 성실한 관세 관행 정착 목적
 - 적용 시기 : 2028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관세법 개정 前	관세법 개정 後
제 9 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 9 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신 설>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 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

	<p>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 38 조의 5(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 38 조의 2 제 1 항, 제 38 조의 3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제 38 조의 4 제 1 항 및 제 4 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 5 조의 2 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p>	<p>제 38 조의 5(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다시 한꺼번에 납세신고(이하 이 조, 제 39 조제 1 항제 6 호 및 제 42 조제 1 항에서 “성실납세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제 8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관세사등이 수입신고서에 적힌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성실납세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 2 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는 제 27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세신고를 한 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 38 조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제 9 조제 4 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p> <p>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납세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신 설>	제38조의6(경정청구서 등 우편제출에 따른 특례) 제38조의2제1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발송(「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청구서 등이 세관장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에 신청·신고 또는 청구된 것으로 본다.
-------	--

2)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제21조 개정)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개정 이후 7년으로 연장함.
 - 개정 사유 : 관세부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 목적
 -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관세법 개정 前	관세법 개정 後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삭제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2. 삭제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3)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 (제42조제2항 개정)

-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부족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함.
 - 개정 사유 : 조세회피 방지 목적
 -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수입한 경우의 가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름

관세법 개정 前	관세법 개정 後
<p>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4)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제76조제3항 개정)

-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였음.
-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 개정 사유 :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
 - 적용 시기 : 2025년 4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관세법 개정 前	관세법 개정 後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25년 4월 1일 전에 제외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5) 수출·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 (제235조제1항제7호 신설)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 개정 사유 :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 목적
 -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관세법 개정 前	관세법 개정 後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

	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신 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 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6)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 (제254조제2항·제7항·제8항 개정 및 신설)

-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 개정 사유 :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 목적
 -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

관세법 개정 前	관세법 개정 後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 물품의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	② 다음 각 호의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p>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p> <p>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p> <p>3.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p>
<p><신 설></p>	<p>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p>
<p><신 설></p>	<p>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p> <p>1. 전자상거래업자등이 폐업한 경우</p> <p>2. 전자상거래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p> <p>3. 제7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p>

7)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 (제264조의2제7호 신설)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 개정 사유 : 체납세액징수의 효율성 증진 목적
 -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

관세법 개정 前	관세법 개정 後
<p>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신 설></p>	<p>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정</p>

	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료 한정한다)
--	---

8)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 (제270조의2제2호 개정)

-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가) 5천만원과 나)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였음
- 법률 개정에 따라, 다)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 개정 사유 :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 확보 목적
 - 적용 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

관세법 개정 前	관세법 개정 後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제1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5천만원 나. 물품원가 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3. 시사점

2025년 관세법 개정은 성실 납세 촉진, 조세 회피 방지, 관세 부과 실효성 강화, 방위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체납세액의 효율적 징수,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 납세 의무자의 월별 납세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무신고 및 가격조작죄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관세 리스크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